예 비 심 사 보 고 서

【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의 안 번 호	45 46

2026. 11. 4.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10. 21.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6. 10. 2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상정)2026. 11. 2. ~ 4. / (의결)2026. 11. 4.

2. 심사결과: 『원안가결』

3. 주요내용

Ⅰ. 세입·세출 결산

1. 회계현황

2025년도의 회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1개,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9개, 기금 18개가 설치·운영**되었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현황

기타특별회계	부 서	기금	부서
의료급여사업	통합돌봄과	남양주시자활기금	복지행정과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장애인복지과
발전소주변지원사업	기후에너지과	양성평등기금	여성아동과
		남양주시장학기금	미래교육과
		체육진흥기금	체육과
수질개선	환경정책과	음식물자원화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자원순환과
		에코랜드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과	농업특산품육성기금	농생명정책과

2. 세입·세출결산

가. 세입·세출 결산 요약

우리시 2025 회계연도 **총세입은 3,210,416백만원**, **총세출은 2,732,224백만원**이며 결산 상 **잉여금은 478,192백만원**임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일반회계	세 입	2,379,998	2,505,015	2,417,333	2,423,669	2,706,346
	세 출	2,004,656	2,049,089	2,051,111	2,141,964	2,451,439
	결산상잉여금	375,343	455,925	366,222	281,705	254,907
공기업 특별회계	세 입	232,849	217,567	218,909	220,874	274,538
	세 출	148,846	142,759	144,623	165,065	161,876
	결산상잉여금	84,003	74,808	74,286	55,809	112,662
기타 특별회계	세 입	224,289	203,900	208,325	275,763	229,532
	세 출	112,706	84,583	73,162	191,954	118,909
	결산상잉여금	111,583	119,316	135,163	83,809	110,623
총계	세 입	2,837,136	2,926,482	2,844,567	2,920,306	3,210,416
	세 출	2,266,208	2,276,432	2,268,896	2,498,983	2,732,224
	결산상잉여금	570,928	650,050	575,671	421,323	478,192

<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

(단위: 백만원)

구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25년	9,489,274	43,278	9,445,996	2,572,154	2,515,410	56,744	
2024년	9,005,401	48,655	8,956,746	2,232,813	2,201,066	31,747	
증 감	483,873	(5,377)	489,250	339,341	314,344	24,997	

나. 세입·세출 결산 총괄

❍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현황

(단위:백만원)

회 계 명	예산현액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결 산 상 잉 여 금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 조 금 반 납 금	순세계 잉여금
계	3,163,376	3,210,416	2,732,224	478,192	51,331	9,619	209,866	17,005	190,371
일 반 회 계	2,688,403	2,706,346	2,451,439	254,907	48,541	6,057	120,233	16,126	63,950
공기업특별회계	275,566	274,538	161,876	112,662	1,031	3,323	24,045	408	83,855
상수도사업	89,638	89,341	69,846	19,495	306	1,551	4,063	17	13,558
하수도사업	185,928	185,197	92,030	93,167	725	1,772	19,982	391	70,297
기타특별회계	199,407	229,532	118,909	110,623	1,759	239	65,588	471	42,566
의료급여사업	8,656	9,131	8,417	714	-	-	-	157	557
발전소주변지원사업	202	202	146	56	-	46	-	10	-
수 질 개 선	30,280	30,285	28,676	1,609	200	-	-	224	1,185
공유재산관리	29,556	33,764	19,761	14,003	-	-	280	-	13,723
교 통 사 업	50,077	51,592	22,806	28,786	1,554	156	24,859	-	2,217
도시재정비촉진	3	3	-	3	-	-	-	-	3
지하수관리	716	694	683	11	-	-	-	8	3
폐기물처리시설	61,352	84,515	26,544	57,971	-	-	34,321	-	23,650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18,565	19,346	11,876	7,470	5	37	6,128	72	1,228

※ 결산상 잉여금 중 현년도 채무상환, 지정재원 잉여금 없음

3. 이월사업비 및 예비비

가. 이월사업비

(1) 일반회계 : 291건 / 174,830,274,523원 (명시・사고이월 중복 6건)

・「지방재정법」제50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6년도로 이월한 사업비에 대하여 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 명시이월 : 108건 / 48,540,597,120원
- 사고이월 : 18건 / 6,056,506,160원
- 계속비이월 : 171건 / 120,233,171,243원

(2) 기타특별회계 : 34건 / 67,586,932,380원

・「지방재정법」제50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6년도로 이월한 사업비에 대하여 회계별로 다음과 같이 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 1건 / 46,400,000원
- 사고이월 : 1건 / 46,400,000원

▶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 1건 / 200,000,000원
- 명시이월 : 1건 / 200,000,000원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 5건 / 279,615,000원
- 계속비이월 : 5건 / 279,615,000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 17건 / 26,569,786,040원
- 명시이월 : 2건 / 1,554,000,000원
- 사고이월 : 1건 / 156,320,000원
- 계속비이월 : 14건 / 24,859,466,040원

▶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 2건 / 34,320,708,500원
- 계속비이월 : 2건 / 34,320,708,500원

▶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 8건 / 6,170,422,840원
- 명시이월 : 1건 / 5,459,000원
- 사고이월 : 1건 / 36,194,400원
- 계속비이월 : 6건 / 6,128,769,440원

나. 예비비

(1) 일반회계 : 15건/ 2,317,765,150원 지출

·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015,703,000**원으로서 15건 **2,929,70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317,765,150**원을 지출하고 **326,001,680**원을 이월하였으며 **285,936,17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

<예비비 사용 현황>

(단위:원)

지출부서	예비비 지출사유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지출잔액
15건		2,929,703,000	2,317,765,150	326,001,680	285,936,170
시민안전관	2025. 7. 16. ~ 7. 20. 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	35,000,000	32,815,460	-	2,184,540
행정지원과	2024. 12. 29.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사고의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지원	29,916,000	26,924,040	-	2,991,960
지역경제과	2025. 5. 16.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39,000,000	39,000,000	-	-
지역경제과	2025. 7. 16. ~ 7. 20. 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	70,387,000	21,116,100	-	49,270,900
복지정책과	국가 추경에 따른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추진	51,370,000	47,601,940	-	3,768,060
보육정책과	2024. 12. 9. 발생한 호평체육문화센터(장난감도서관) 화재 피해의 신속한 복구 지원	100,000,000	99,671,360	-	328,640
체육과	2024. 12. 9. 발생한 호평체육문화센터(장난감도서관) 화재 피해의 신속한 복구 지원	600,000,000	600,000,000	-	-
체육과	대설로 인해 발생한 약대울 체육시설 피해 복구 지원	600,000,000	452,142,280	-	147,857,720
자원순환과	폐기물 매립 관련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의 지연이자 최소화	596,494,000	596,493,650	-	350
건축관리과	2025. 5. 16.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9,000,000	9,000,000	-	-
건축관리과	2025. 7. 16. ~ 7. 20. 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	42,000,000	12,600,000	-	29,400,000
농업기술과	2025. 5. 16.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2,000,000	2,000,000	-	-
농업기술과	2025. 7. 16. ~ 7. 20. 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	869,000	790,500	-	78,500
도로관리과	2025. 7. 16. ~ 7. 20. 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	453,667,000	127,665,320	326,001,680	-
화도읍 도시건축과	4.22.(화) 화도읍 옹벽 전도 사고 발생에 따라 추가 붕괴 방지 및 주민안전확보를 위한 응급복구 추진	300,000,000	249,944,500	-	50,055,500

(2) 기타특별회계 : 0건/ 0원 지출

· 2025년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05,577,000원으로서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및 지출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함

가. 예산이용 : 없음

나. 예산전용 : 7건 / 190백만원

(1) 일반회계 : 7건 / 190백만원

(단위:원)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유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7건			1,177,981,000	190,142,000	190,142,000	
지역경제과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16,600,000	116,600,000	-	하반기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인건비 교부를 위한 예산과목 변경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	116,600,000	
복지정책과	일상돌봄서비스사업	201-01 사무관리비	35,000,000	20,000,000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공백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어, 사무관리비 예산을 전용해서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함
	일상돌봄서비스사업	307-05 민간위탁금	325,000,000	-	20,000,000	
복지정책과	누구나 돌봄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	8,700,000	-	누구나 돌봄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공백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어, 사무관리비 예산을 전용해서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함
	누구나 돌봄 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243,860,000	-	8,70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복지정책과	누구나 돌봄 사업	201-03 행사운영비	32,800,000	12,300,000	-	누구나 돌봄 사업 추진 예산 부족(6월 현재 전액 소진)으로 서비스 중단 예정으로, 행사운영비 예산을 전용 후 사업을 추진하여 서비스 미제공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함.
	누구나 돌봄 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231,560,000	-	12,300,000	
보육정책과	어린이 안전 승강장 키즈스테이션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9,200,000	3,750,000	-	시립진접어린이집 전기안전점검 실시 결과 전기누전으로 인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이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동절기 전 조속히 전기설비를 보수하고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전용
	어린이집 환경개선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97,000,000	-	3,750,000	
기후에너지과	공공분야 전기차 화재예방시스템	201-01 사무관리비	21,000,000	21,000,000	-	세출예산 통계목이 세출예산 성질에 맞지 아니함
	공공분야 전기차 화재예방시스템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	21,000,000	
진건읍 생활자치과	기본경비	201-02 공공운영비	24,720,000	7,792,000	-	공무직 정년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예산 부족
	인력운영비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21,241,000	-	7,792,000	

(2) 기타특별회계 : 없음

다. 예산 이체

1) 일반회계 : 118건 / 9,610,032,000원

· 2025년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변경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118건 9,610,032,000원을 이체한 사항에 대하여 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2) 기타특별회계 : 예산이체 없음

5. 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법 제44조(채무부담행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의 규정에 따른 2025년도 채무부담행위를 결산한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Ⅲ. 기금결산

❍ 2025년도 말 현재 설치 ·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8종으로서

·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489,248,103,860원에서

· 2025년도 조성액은 116,688,983,776원이며, 17,086,385,44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 588,850,702,196원이 관리되고 있음

(단위:원)

구분 /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조성액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489,248,103,860	116,688,983,776	17,086,385,440	588,850,702,196
재난관리기금	52,093,724,879	6,223,153,210	2,905,096,820	55,411,781,269
남양주시 고향사랑기금	185,205,040	103,600,760	-	288,805,800
인구정책 지원기금	-	6,355,432,850	-	6,355,432,85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38,932,980,660	74,219,573,090	9,340,611,680	303,811,942,070
중소기업육성기금	27,572,164,602	1,861,680,890	687,891,888	28,745,953,604
신청사건립기금	85,668,612,360	20,000,740,200	-	105,669,352,560
식품진흥기금	687,826,290	215,688,380	219,149,160	684,365,510
남양주시자활기금	2,208,811,616	134,757,769	109,421,200	2,234,148,185
노인복지기금	2,058,980,894	65,460,528	61,950,000	2,062,491,422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20,045,858,900	2,308,981,670	207,800,000	22,147,040,570
양성평등기금	2,132,583,923	67,246,120	77,375,500	2,122,454,543
남양주시장학기금	8,263,150,628	439,394,982	364,003,120	8,338,542,490
체육진흥기금	6,235,790,354	199,168,998	166,189,000	6,268,770,352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9,605,480,431	668,132,848	491,956,382	9,781,656,897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0,309,353,872	2,103,036,301	1,532,022,230	10,880,367,943
옥외광고발전기금	921,341,955	521,177,820	221,984,310	1,220,535,465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0,013,367,916	687,879,410	250,934,150	20,450,313,176
농업특산품육성기금	2,312,869,540	513,877,950	450,000,000	2,376,747,490

Ⅳ. 재무제표 결산

1.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

❍ 2025회계연도의 남양주시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 정 상 태 표]

(단위:백만원, %)

구 분	2025		2024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동자산	858,080	9.04	757,244	8.41
투자자산	121,959	1.29	208,325	2.31
일반유형자산	564,676	5.95	564,777	6.27
주민편의시설	2,123,822	22.38	1,879,122	20.87
사회기반시설	5,790,785	61.02	5,565,883	61.81
기타비유동자산	29,952	0.32	30,050	0.33
자산총계	**9,489,274**	**100.00**	**9,005,401**	**100.00**
유동부채	24,066	55.61	30,036	61.73
장기차입부채	-	0.00	-	0.00
기타비유동부채	19,212	44.39	18,619	38.27
부채총계	**43,278**	**100.00**	**48,655**	**100.00**
고정순자산	8,508,930	90.08	8,039,904	89.76
특정순자산	299,079	3.17	267,771	2.99
일반순자산	637,987	6.75	649,236	7.25
순자산총계	**9,445,996**	**100.00**	**8,956,746**	**100.00**
부채및순자산총계	**9,489,274**	**-**	**9,005,401**	**-**

▶ 2025회계연도 말 남양주시의 자산은 9,489,274백만원으로 전년도 9,005,401백만원보다 483,873백만원(5.37%)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부채는 43,278백만원으로 전년도 48,655백만원보다 5,377백만원(11.05%) 감소하였습니다.

[재 정 운 영 표(기능별)]

(단위:백만원)

구 분	2025					2024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Ⅰ.사업순원가	2,226,475	1,286,223	940,252	-	940,252	1,916,970	1,028,868	888,102	-	888,102
Ⅱ.관리운영비	-	-	314,787	(71,383)	243,404	-	-	301,756	(69,048)	232,708
Ⅲ.비배분비용	-	-	52,094	(6,563)	45,531	-	-	54,115	(2,727)	51,388
Ⅳ.비배분수익	-	-	210,349	(6,563)	203,786	-	-	129,957	(2,727)	127,230
Ⅴ.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	-	1,096,784	(71,383)	1,025,401	-	-	1,114,016	(69,048)	1,044,968
Ⅵ.일반수익	-	-	1,153,528	(71,383)	1,082,145	-	-	1,145,763	(69,048)	1,076,715
Ⅶ.재정운영결과 (Ⅴ-Ⅵ)	-	-	(56,744)	-	(56,744)	-	-	(31,747)	-	(31,747)

▶ 2025회계연도 남양주시의 사업순원가는 940,252백만원이고 관리운영비(314,787백만원), 비배분비용(52,094백만원) 및 비배분수익(210,349백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096,784백만원입니다.

[재 정 운 영 표(성질별)]

(단위:백만원)

구 분	2025		2024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인건비	259,181	10.30	248,509	11.29
운영비	650,521	25.86	613,039	27.85
정부간이전비용	88,181	3.51	80,415	3.65
민간등이전비용	1,405,695	55.88	1,138,724	51.74
기타비용	111,832	4.45	120,379	5.47
비용총계	**2,515,410**	**100.00**	**2,201,066**	**100.00**
자체조달수익	867,697	33.73	784,860	35.15
정부간이전수익	1,694,615	65.88	1,438,926	64.44
기타수익	9,842	0.39	9,027	0.41
수익총계	**2,572,154**	**100.00**	**2,232,813**	**100.00**
재정운영결과	**(56,744)**		**(31,747)**	**-**

▶ 또한 2025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비용은 인건비 259,181백만원(10.30%), 운영비 650,521백만원(25.86%), 정부간이전비용 88,181백만원(3.51%), 민간 등 이전비용 1,405,695백만원(55.88%), 기타비용 111,832백만원(4.45%)등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867,697백만원(33.73%)이고, 정부간이전수익 1,694,615백만원(65.88%), 기타수익 9,842백만원(0.39%)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총비용은 2,515,410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14,344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총수익은 2,572,154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39,341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익은 1,694,615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55,689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2025회계연도 남양주시의 운영차액(수익-비용)은 56,744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4,99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 채권 현재액

❍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1,470,613,714원에서 당해연도에 1,121,551,000원이 발생하고 2,295,943,13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296,221,584원이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위:원)

구 분 /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11,470,613,714	1,121,551,000	2,295,943,130	10,296,221,584
일반회계	7,204,147,000	186,331,000	328,020,000	7,062,458,000
남양주시자활기금	314,918,924	-	63,875,340	251,043,584
농업특산품육성기금	3,951,547,790	935,220,000	1,904,047,790	2,982,720,000

3. 채무결산

❍ 남양주시에서 상환하여야 할 채무는 0원입니다.

❍ 남양주시가 민간공공기관 등과 협약·확약·보증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 채무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우발채무는 예산 외 의무부담 1건, 211,900백만원이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위:백만원)

약정 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 추정액)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비용 부담 협약	덕송내각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재구조화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주)	211,900	164,900	2013-10-14 ~ 2017-04-13	차입금 등 상환 후 잔액 비용부담 ('24~' 67년)

Ⅴ. 성과보고서 결산

❍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해 회계연도의 '상상 더 이상 남양주'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슈퍼성장시대 첨단산업 허브도시 조성·시민시장시대 진심소통 행정혁신·실용 통합시대 목표달성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시정방침을 세우고 전략목표(21개), 정책사업목표(13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1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목표 달성현황

(단위:개)

실국명	성과목표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21	137	213	27	169	17
의회사무국	1	1	2	0	2	0
시민시장담당관	1	3	3	1	0	2
시민안전관	1	3	7	0	7	0
홍보담당관	1	1	3	0	3	0
감사관	1	1	2	0	2	0
민원담당관	1	1	3	0	2	1
기획조정실	1	18	24	4	17	3
재정경제국	1	13	21	4	16	1
복지국	1	15	22	3	19	0
문화교육국	1	17	27	6	20	1
환경국	1	14	20	3	15	2
도시국	1	12	13	0	13	0
교통국	1	8	14	1	11	2
미래도시추진단	1	5	7	0	6	1
남양주보건소	1	4	8	1	7	0
남양주풍양보건소	1	2	4	1	3	0
동부보건소	1	2	3	1	2	0
농업기술센터	1	5	12	0	9	3
상하수도관리센터	1	1	1	0	1	0
도로관리사업소	1	5	6	0	6	0
공원녹지관리사업소	1	6	11	2	8	1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다산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별내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읍면동	0	0	0	0	0	0

Ⅵ.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재액 결산

1.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2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 토지 18,973건 17,893,518㎡ 4,591,888,059,584원

· 건물 420건 485,994㎡ 730,995,145,090원

· 입목죽 654,817건 9,952,692,649원

· 공작물 19,158건 745,670,887,137원

· 선박 등 195건 397,670,809,434원으로

▶ 총 6,476,177,593,894원 상당이며, 이를 용도로 구분하여 결산하면 행정재산은 6,078,968,106,552원, 일반재산은 81,217,434,482원, 건설중인 재산은 315,992,052,860원입니다.

2. 물품증감 및 현재액

❍ 전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3,773개 35,411,020,120원으로 당해연도에 신규 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210개 1,546,536,332원이 증가하였으며, 38개 747,264,044원이 매각 및 폐기처분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3,945개 36,210,292,408원의 물품이 관리되고 있는 사항을 결산하였습니다.

(단위:개, 원)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3,773	35,411,020,120	210	1,546,536,332	38	747,264,044	3,945	36,210,292,408

Ⅶ. 심사 시 고려사항

❍ 결산검사위원 개선·권고사항 목록

연번	제 목	해 당 부 서
1	사업비 정산관련 반환금 세입예산 관리 철저	주택과 농축산지원과
2	세출예산 편성 기준 준수 및 예산변경 최소화	도시정책과
3	성과예산제도 운용 개선방안 강구	예산과
4	성인지 예산 목표미달성 사업 관리 철저	청년담당관 일자리지원과 통합돌봄과 여성아동과 보육과 남보 건강증진과 풍양 건강증진과
5	보조금 사업 집행 및 운용관리 철저	지역경제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하수처리과
6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강화로 재원 사장 방지	의회법무과 지역경제과 위생과 도로건설과 농축산지원과 하천공원관리과
7	어린이집 CCTV 대여료 지원사업 예산관리 효율성 제고	보육과
8	세입목 착오결의로 인한 세입결산 부적정	기후에너지과 교통정책과
9	당해연도 세출 반납 처리 철저	자원순환과 농축산지원과
10	소하천 정비사업 집행 효율화 노력 권고	생태하천과
11	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예산 불용 방지 및 선제적 관리 강화	하수처리과
12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명확성 제고	재산관리과
13	성과지표의 질적 평가 측정산식 마련	미래교육과
14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세입환급 최소화 권고	도시재생과 장애인복지과 도로관리과
15	예산전용 최소화 권고	기후에너지과

Ⅷ. 종합의견

1. 결산검사위원 총평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남양주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2026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수입과 지출을 세입과 세출로서 예산에 편성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예측 가능한 세입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의 경비를 충당하여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용하여야 하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하여야 합니다.

❍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1년 동안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지역 발전의 기여도 등을 분석·평가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됩니다.

❍ 2025회계연도 남양주시 결산검사는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성과보고서를 기초로 계산의 과오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 결산검사 결과, 남양주시의 2025년도 총 예산규모는 3,163,37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3,210,416백만원)의 비율은 101.5%, 예산현액 대비 세출결산액(2,732,224백만원)의 비율은 86.4%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0,371백만원(예산현액 대비 6.0%)으로 확인됩니다.

❍ 전년 대비 세입결산액은 9.9% 증가, 세출결산액은 9.3% 증가하였고, 순자산은 5.5% 증가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하는 추세입니다.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액 2,451,439백만원 중 **사회복지분야가 1,295,678백만원(52.9%)**으로 지출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교통 및 물류분야가 237,813백만원(9.7%), 기타 224,330백만원(9.2%)순입니다.

❍ 이번 2025회계연도 직영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영결산을 보면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74,974백만원, 세입결산액 504,070백만원, 세출결산액 280,785백만원(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59.1%)이며, 기금의 경우 조성액(전년도말 현재액+현년도 조성액) 605,937백만원, 사용액 17,086백만원(조성액 대비 사용비율 2.8%),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88,85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4% 증가하였습니다.

❍ 남양주시는 재정자주도가 52%, 재정자립도가 28%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73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가용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재정 운영에 주력해왔습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한 노력과 전년도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한 점은 고무적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전체 세입 중 의존재원 비율이 5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국·도비 보조금 재원별 세입목 설정 및 보조금 반환금의 정확한 세입 처리 등 기초적인 회계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과 결산의 부정확한 부분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현장 수요와 사업 수행 역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불용 및

이월을 사전에 방지하고, 변동 상황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유연한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 예산 제도가 형식적인 행정 절차를 넘어 시정 발전의 실질적인 평가지표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해야 합니다. 단순 수치 위주의 정량적 지표에서 나아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적극 발굴하고, 축적된 결산 성과가 차년도 예산 편성 및 재원 배분에 환류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 의견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실무적 보완 사항들을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견고함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남양주시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본 검사 결과가 향후 남양주시의 재정 운영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전문위원 검토의견

❍ 남양주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는 교부세,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이 세입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다양한 재원 발굴 노력과 효율적인 재원 활용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음

❍ 전체 세입 중 의존재원 비율이 50%이상이므로 각 부서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현장 수요와 사업 수행 역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은 물론이고 사업추진에 대해 면밀한 관심과 감시로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의 기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심사 시 주요의견

❍ 정산에 따른 반환금 등 발생 가능한 세입이 예산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실제 수납된 반환금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적기에 반영하여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등 세입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 성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부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당초 설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사업별 목표 미달성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과 지속적인 실적 관리를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가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주요투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적기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에서 예산 부족 및 행정절차 이행 미흡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명시이월이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계획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행정에 대한 신뢰와 사업 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소요 재원의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예산 불용 및 과다 반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 수립 및 수요 분석 미흡 등으로 인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거나 과다 반납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예산 사장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21. 1. 12.> [전문개정 2011. 8. 4.]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8. 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

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1.>

[전문개정 2011. 8. 4.]